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심사 및 운영실태조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마목 중 “전담인력”을 “인력”으로 한다.

제4조 중 “10일 이내에”를 “제7조에 따른 사업장 심사 10일 이전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처리시설 소재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 3. 처리시설의 변경

③ 인증업자가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2조제1호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 2. 변경 전·후 공정도

3. 변경 이후 제8조제3항의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용도별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한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의 시설요건과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를“(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운영실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전년도 운영실태조사의 최초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용도의 순환골재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연도 운영실태조사의 최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인증업자는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그 결과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 규정 외의 사유로 해당연도 운영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품질인증의 취소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라 인증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해당 인증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품질인증 업무”를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조사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조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비용 및 수수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목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목 전단 중 “행정처분 기준”을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으로, “위반행위를 한”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제2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별표 제2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4차”란을 전체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1차란 중 “1개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1차의 2차란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바목의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3차란 중 “인증사용중지 6개월”을 “인증취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본점”을 “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쪽 중 “전담인력”을 “인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 제 호”를 “:”로 하고, 같은 서식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처리시설 소재지

별지 제3호서식 중 “사무소”를 “처리시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 행정처분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인증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사유를 고려하여 인증사용중지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기계설비의 고장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부적합한 제품이 생산·공급되었으나 즉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였거나 그 제품을 회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한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순환골재의 생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	법 제37조	인증취소	-	-

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2호			
다. 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	-
라.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4호가목	인증취소	-	-
마.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4호나목	인증 사용중지 3개월	인증 사용중지 6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인증 사용중지 3개월	인증 사용중지 6개월	인증취소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장	연락처	전화		
		처리시설		팩스		
담당자	성명		연락처			
시설 현황	건설폐기물 처리능력		톤/일	순환골재 생산능력		
	생산 시설	파쇄/분쇄시설	단계	야적시설	전체	m <sup>2</sup>
		분리/선별시설	단계		품질인증 순환골재 생산용 건설폐기물 보관면적	m <sup>2</sup>
	보관시설	전체	m <sup>2</sup>	계량시설		
		품질인증 순환골재 보관면적	m <sup>2</sup>	굴삭기 또는 로더		
			투입폐기물의 종류			
순환골재 신청용도	[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 굵은골재			
			[ ] 잔골재			
	[ ]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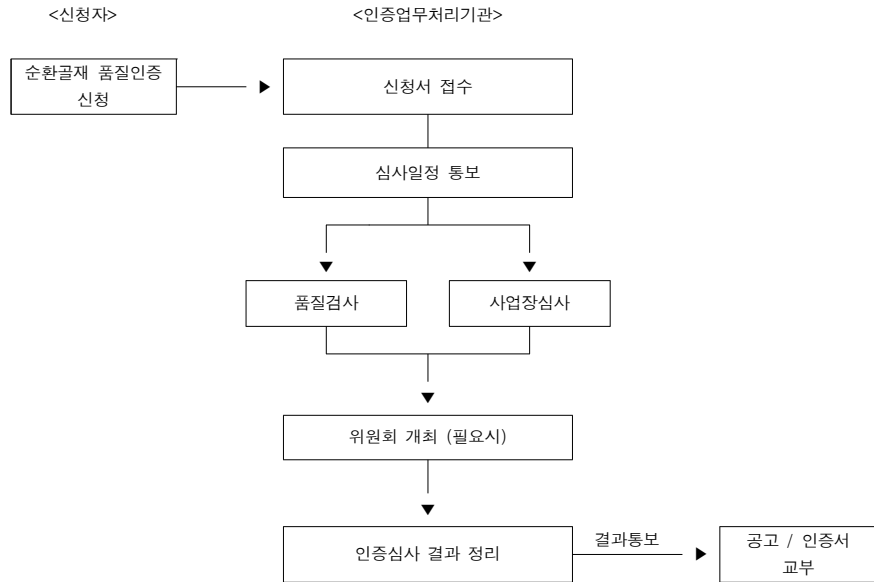
첨부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2부)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구분	제출서류
1. 생산시설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
2. 야적시설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	가.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나.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품질관리 및 인력	가.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마. 품질관리 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나.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안전관리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8. 기타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첨부  
서류

처리 절차



비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앞 쪽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 :

##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1. 사업자명:

2. 대표자: (생년월일: )

3. 사업장 소재지:

4. 처리시설 소재지:

5. 품질인증 용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 골재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 직인



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 (생략)

②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처리시설의 변경(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 성능 이상의 생산시설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  
-----  
-----.

1. ~ 3. (현행과 같음)

4. 처리시설 소재지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

1. (현행과 같음)

2.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시설의 변경

③ 인증업자가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2. 변경 전·후 공정도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일부부터 소급하여 1년 전까지 제6조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심사 또는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3. 변경 이후 제8조제3항의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용도별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한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의 시설요건과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경우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

① ----- 운영실태 -----

다만, 직전년도 운영실태조사의 최초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용도의 순환골재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연도 운영실태조사의 최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인증업자는

<신 설>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그 결과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 규정 외의 사유로 해당연도 운영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신 설>

제17조의3(품질인증의 취소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라 인증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해당 인증업자에게 알려야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① (생략)

<신 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한다.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  
---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조사 업무-----  
-----  
-----.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조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비용 및 수수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